(재)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-241

『2021년 취·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』 참여자 모집 공고

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시 거주 취·창업 재직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취·창업 활성화로 안정적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「2021년 취·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」의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1년 6월 14일

(재)인천테크노파크 원장

Ⅰ 사업 개요

○ 사 업 명 : 2021년 취·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

○ 지원대상 : **신청일 기준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~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(무주택자)**

○ 지원내용 : **청년 1인 월 10만원 월세 지원(최대 8개월, 생애 1회)**

<u>*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급</u>

Ⅱ 신청자격

○ 신청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능

○ 연 령 : **만 19세 이상 ~ 39세 이하** 청년(1981.1.1.~2001.12.31.)

○ 주소지 :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**인천시 거주 1인 가구**

○ 주택 기준 : **월세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**의 민간주택 거주하는 무주택자

-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으로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체결 건만 유효

- 부모 및 친·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소유건물과 임대차계약 체결, 보증금 100% 전세 계약자, 영업용 오피스텔, 상가 건물 월세 계약자는 지원 불가

○ 소득 기준 : 취·창업으로 인한 **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**

- 2021년 보건복지부 고시 1인 가구 소득 기준 : 세전 월 2,741,747원
- 기준 중위소득 조회가 어려운 경우 「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%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」 준용

가구원 수	건강보험료 부과액 (단위: 월/원)		
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
1인 가구	94,467	69,399	95,459

*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.

○ 재직 기준

- (취업자) 4대 사회보험 가입자
- (창업자)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자(※ 업종에 따라 소득증명 요청할 수 있음)

○ 제외대상 : 신청일 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제한
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①항 해당 급여수급자)
- 주택 소유자
- 정부 등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
  - ▸ 행복주택, 전세 임대주택, 사회주택, 매입임대사업주택 등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, 공무직
- 소비·향락·도박·사행 등 비사회적업 업종사자
- 사업참여 중 정부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중인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- 기타 인천광역시 및 운영기관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  - ▸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, 희망키움통장, 내일키움통장,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, 인천드림For청년통장, (1석5조)인천 재직청년 드림포인트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신청 가능

Ⅲ 신청방법

○ 신청 및 접수기간 : 2021. 6. 14(월) ~ 2021. 7. 30(금), 18:00

- 접수, 자격검토 및 지원 대상자 선정·통보

구분	접수 기간	자격검토 기간	참여자 선정 통보	비 고
1	6. 14(월) ~ 6. 25(금)	6. 28(월) ~ 7. 09(금)	7. 12(월)	해당 일정은 별도의 공지 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.
2	7. 01(목) ~ 7. 14(수)	7. 15(목) ~ 7. 26(월)	7. 27(화)	
3	7. 19(월) ~ 7. 30(금)	8. 02(월) ~ 8. 13(금)	8. 16(월)	
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

- 유유기지(제물포) 홈페이지 접속(www.inuu.kr) ⇒ 회원가입(로그인) ⇒ 프로그램 ⇒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사업 ⇒ 신청하기 ⇒ 자격검증(자격 요건 자가 점검) ⇒ 신청서 작성 ⇒ 제출(관련서류 첨부)

○ 신청서류 [제출서류 일체 신청일 기준 **7일 이내** 발급분으로 운영기관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말함.]

- [서식1] 「취·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」 지원신청서 1부
- [서식2] 「취·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」신청자 확인서 1부
- [서식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
- [서식4]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(주소변동이력 포함, 신청일 기준)
-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내역서(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분) 각 1부
-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(신청일 기준 최근 1년분)
- (취업자)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
- (창업자)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
○ 선정통보방법 : 홈페이지 공지, 문자 등 개별 통보

Ⅳ 지원절차

참여자 모집		참여자 선정		월세 지원
참여자 모집 공고 신청접수(온라인)	⇨	참여요건, 제출서류 검토 공적 조회, 적격자 선정·통보	⇨	참여자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·관리

Ⅴ 유의사항

○ 참여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제출서류는 참여자가 직접 발급,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, 모든 제출서류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귀속하고,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○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○ 인천지역 외 전출, 타 주거정책 참여, 주택 취득, 월세 계약 등 자격요건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중단 신청서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퇴사, 폐업 등 취·창업 변동의 경우 한해 유예기간 적용할 수 있고, 이직, 복직 등 취·창업 자격이 재개되어 사업참여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경우 유예기간 포함하여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(유예기간 신청은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지원변경 신청서 제출)

○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지원사업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거나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사업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면 선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신청자 본인도 신청일 이후 사업참여를 원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관에 정당한 이유를 들어 참여 취소 의사를 밝힐 수 있고, 상호 협의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기타 세부사항은 ‘2021년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고,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.

- (문의) (재)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 032-725-3048~3049, 3066~3067

○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,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절차에 따라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.